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가단54963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품

담당변호사 홍중표

피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박응석

변론 종결2024. 10. 2.

판결 선고2024.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4.부터 2024. 11.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갑 제1~4, 29호증, 을 제1~5, 9,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 E(이하 '고인')은 고 F와 혼인해 슬하에 G와 원고들, 피고를 자녀로 두고 2019. 5. 16. 사망했다.

나. 피고는 2016. 2. 18. 고인이 소유했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고인이 사망한 후 고인의 상속인인 G와 원고들, 피고는 2019년 9월경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려고 했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이지지 않았다. G와 원고들, 피고는 2020.

11. 3.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전문에는 '고인의 유고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협의분할하며 상속인들은 추후 상속재산 분배(유류분 포함)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가. 피고는 다음 ①, ②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배(유류분 포함)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가 존재하는데, 위 부제소 합의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금전을 포함해 상속과 증여에 관한 모든 상속 분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② 2019년 9월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 B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것을 항의해 협의를 되지

않았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을 고려해 2019년 9월경 있었던 상속재산분할협의와는 달리 피고가 3,211,200원 상당의 부동산만을 상속받기로 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되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피고가 인출한 현금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점, ② 고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증여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들이 고인의 의사능력의 존부에 따른 이 사건 증여 유효·무효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들이 피고가 고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의 액수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8, 27, 28, 32, 3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2014. 10. 9. H 병원에서 실시한 치매 검사에서 고인은 간이정신검사(Mini-Mental State Exam, MMSE) 15점, 전반적 퇴화척도(Global Deterioration Scale, GDS) 4단계 상태로 인지기능저하로 인한 노년성 치매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② 간이정신검사는 치매 여부를 가려내는 일종의 검사로서 인지기능을 시간에 대한 지남력(5점), 장소에 대한 지남력(5점), 기억등록능력(3점),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5점), 기억회상능력(3점), 언어 및 시공간적 구성능력(9점) 등의 항목으로 나누고 총 30점 중에서 피검자가 항목별로 획득한 점수 합계에 따라 치매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인데, 획득한 점수가 낮을수록 심각한 치매 상태를 나타내고 0~17점은 분명한 인지기능 장애(severe cognitive impairment)에 해당하는 점, ③ 전반적 퇴화척도 4단계는 자신 생활의 최근 사건과 시사문제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중요한 과거사를 잊거나 순차적 뺄셈에서 집중력 장애가 관찰되고 혼자서 외출하는 것과 금전 관리에 지장이 있는 중등도의 인지 장애 상태라고 평가하는 점, ④ 2015. 12. 10.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인지기능 검사에서 고인은 간이정신검사(MMSE)에서 9점, 임상치매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CDR) 검사에서 3점을 받고 판독의는 심한 전반적인 인지장애가 관찰되며 이전검사(2015년 4월)와 비교해 악화된 양상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⑤ 임상치매척도 3점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사실만 보존되는 심한 기억장애', '사람에 대한 지남력만 유지되고 있음', '판단이나 문제해결이 불가능함', '집 밖에서는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외견상으로는 가정을 떠나 외부에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어 보임', '집안에서 의미 있는 기능수행이 없음' 등의 평가를 받는 심한(severe) 치매 상태인 점, ⑥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2016. 1. 8. 고인의 섬망 상태가 심해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협진을 요청한 점, ⑦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작성한 2016. 1. 11. 자 진료기록에는 고인에게 섬망 증상이 있다는 "Delirious features (+): 여전히 존재함", "헛소리, 동문서답"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점, ⑧ 고인은 2017. 4. 24.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지기능검사를 받았는데 간이정신검사에서 11점, 임상치매척도 검사에서 3점을 받았으므로 고인의 치매 상태가 2015. 12. 10. 자 검사 당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 즉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무효이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고인의 예금계좌에서 무단으로 2억 2000만 원을 인출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원고들 상속분인 44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다음 ①, ②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4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① 고인은 2017년 1월 자신의 급여를 장남인 피고에게 맡기면서 그 돈으로 부모님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 지출 관리를 피고가 맡아서 하도록 지시했고 "예전에 네가 부모를 위하여 대신 지출한 병원비를 포함하여 사용한 지출금이 많으니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이 돈에서 꺼내서 벌충(변제)해라"라고도 했다. 피고가 고인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피고가 고인과 고 F를 위해 사용한 돈을 위와 같은 고인의 지시로 변제 처리한 것이거나 고인과 고 F의 병원비, 약제비, 가사도우미 비용, 장례비, 세금 대납 등으로 사용한 것이다. ② 고 F가 2018년 3월에 사망하고 상속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무사가 생전 증여분 등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평가해 제시한 상속세 산정이 잘못되는 바람에 상속세가 늘어났고 피고가 증여세 89,385,216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와 같은 사정변경을 알린 후 일단 피고가 위 증여세를 피고 돈으로 납부하고 추후 고인 계좌에 있는 보관금에서 8900만 원을 피고가 가져가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며 원고들과 고인에게 양해와 동의를 구한 후 고인 계좌에서 8900만 원을 인출한 것이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는 2017. 9. 1.부터 2019. 3. 26.까지 고인 예금계좌에서 수차례 현금을 인출했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 고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합계 2억 2000만 원인 점, ② 위 나항의 내용을 고려하면 고인은 적어도 2015. 12. 10.부터는 판단이나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고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이 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고인이 피고에게 고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권한을 주었다거나 피고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고인 예금계좌에 있는 돈으로 충당하도록 허락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④ 피고는 고인과 고 F의 약제비, 진료비, 세금을 자신이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을 제14호증을 제출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진료비와 약제비를 납부한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고인을 위해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을 제14호증을 제출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인을 위해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출했는지 알 수 없는 점, ⑥ 피고는 피고가 고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대납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을 제14호증을 제출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대납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인출한 돈이 고인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고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2억 2000만 원 상당 이익을 얻고 고인에게 위 금액 상당 손해를 가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고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4400만 원(2억 2000만 원×1/5)을 지급해야 한다(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뿐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라. 피고는 원고들의 소 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원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피고를

괴롭히기 위해 권리를 행사한다거나 사회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로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각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1. 4.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3.까지는 민법에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반정우

별지